

『구미시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5월 26일

나. 발 의 자 : 김태근, 강승수, 김복자, 박세진, 손홍섭,
정하영, 허 복 (7명)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5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6월 4일

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태근 의원

나. 제안이유

금오산 대혜폭포에서 1977. 9. 5. 자연보호운동 전국 최초시작,
1978. 10. 5. 자연보호헌장 선포 및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조에
따라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·
관리하기 위해 자연환경운동 조직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.
- 자연보호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자연보호사업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,
안 제7조).
-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
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조, 제5조, 제54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금오산 대혜폭포에서 1977. 9. 5. 자연보호운동 전국 최초시작, 1978. 10. 5. 자연보호헌장 선포 및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하기 위해 자연환경운동 조직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 자연보호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, 안 제7조에서 자연보호사업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• 본 조례안은

구미 금오산에서 전국 최초 시작된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·발전시켜 자연보호운동 종주도시의 위상정립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자연보호운동의 육성과 지원, 보조금 지원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의 조직과 육성 및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
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